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가단1548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현종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8. 17.

판 결 선 고 2023. 10. 12.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22. 7. 24.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1. 21. C에게 4,992,718원을 이율 연 14.95%, 지연배상금율 연 25%, 만기 2011. 5. 8.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C이 이자 등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후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1. 12. 9.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8,399,920원 및 그 중 2,240,677원에 대하여 2021.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9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이 2022. 3. 8. 확정되었다.

나. 한편 C의 아버지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2. 7. 24.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C, E이 있고, C의 상속분은 2/7지분이다.

다.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7.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22. 8. 24. 접수 제105391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C은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질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원고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데,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의 소유로 귀속시킨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인 2/7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의 경우 C은 피상속인인 망인의 사망으로 법률(민법 제1005조, 제187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므로,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C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피고에게 C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의사나 인식이 없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는 2회에 걸친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을 제1 내지 3호증은 적법하게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의 채권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인데 아직 그 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설아

[별지]

부동산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벽돌조 경사슬래브위 기와지붕 3층

다세대주택

1층 82.19㎡

2층 82.19㎡

3층 82.19㎡

지층 82.1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벽돌조

40.6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 188.7㎡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188.7분의 23.32

